

15. 주차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902호 1999. 2. 8

개 정 이 유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명령제를 폐지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와 관련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민간로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5조)
- 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물의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법정 주차시설외에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9조의 2).
- 다.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정·안전도인정취소·사용검사 등에 대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10).

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로외주차장의 설치)”를 “(로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하고, 동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로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로외주차장은 당해 로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로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자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관리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로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조례 또는 관리규정이”를 “조례가”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로외주차장관리자”를 “로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로외주차장에 한한다)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제6항 전단중“(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로외주차장에 한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6제1항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 및 제19조의8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으로 한다.

제19조의9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으로 한다.

제19조의10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3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의 관리자”를 “로외주차장의 관리자”로 하고,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3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제19조의3제3항에서”를 “제19조의3에서”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로외주차장의 설치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로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